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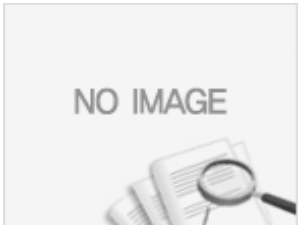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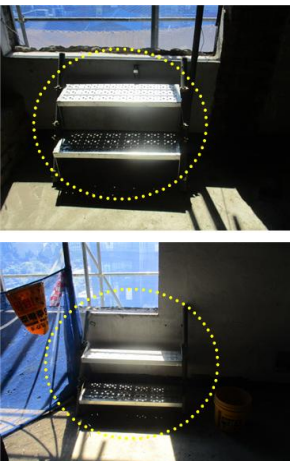

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## 〔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 공사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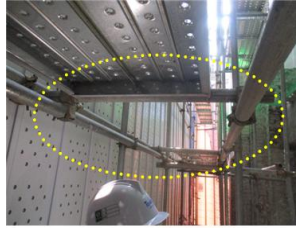
- 점검일시 : 2018.06.01 (금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함창록, 박상종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5층 작업장에서 외벽 비계로 넘어가는 진출입 통로가 없어 근로자가 콘크리트 난간을 넘어 갈 때 전도 재해 우려가 있으니 근로자가 안전하게 비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		2018.06.08	
		<p>가설계단 설치 및 고정, 추락방지망 설치 완료</p>	
<p>○ 가설비계 안전</p> <p>- 외벽에 설치된 비계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해야하나 고정이 미비한 곳이 있으니 작업 발판 점검 후 견고하게 고정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(작업 발판의 구조)</p>		2018.06.08	
		<p>작업발판 점검 및 재결속, 외부 비계 클립 결속 재확인</p>	

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3층, 5층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분전반은 관리 책임자를 지정, 표기하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6 (분전반)</p>		<p>2018.06.08</p> <p>분전반 관리책임자 지정 및 표기 완료. 자물쇠 잠금 재확인</p>	
<p>○ 기계기구 안전</p> <p>- 3층 작업장에 있는 고속절단기는 보호 덮개 및 핸들바이스가 미설치되어 있어 작업 시 연삭 날 파단에 의한 비래, 절단 자재의 요동에 의한 재해가 우려되니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(연삭숫돌의 덮개 등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6 (고속절단기)</p>		<p>2018.06.08</p> <p>해당 고속절단기 반출 완료. 해당 작업자 장비에 관한 안전사항 재교육 실시.</p>	
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4층 작업장에서 외벽 비계로 기계기구를 반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설계단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뒤집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2 (작업발판 및 계단)</p>		<p>2018.06.08</p> <p>가설계단 견고하게 고정 확인.</p>	

○ 추락재해 예방

- 작업을 위하여 철거한 1, 2층 사이 비계발판은 근로자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재 설치하기 바람.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(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)



2018.06.07

작업발판 재설치 완료 및  
작업자 안전교육 재실시

